

# 울산광역시 북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

제624호 2010. 3. 8. (월)

## 조 례

- 조례 제542호 [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] ..... 2

## 공 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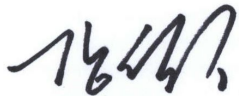
- 공고 제2010-156호 [울산 울동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공고] ..... 7
- 공고 제2010-163호 [확인검사대행자 등록취소 공고] ..... 8

### 【 안 내 문 】

<p><input type="checkbox"/> 북구 전자공보는 매주 월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매주 금요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북구 전자공보 확인 방법</p> <p>⇒ 구 홈페이지(<a href="http://www.bukgu.ulsan.kr">http://www.bukgu.ulsan.kr</a>) → 행정정보 → 알림마당 → 북구공보에서 열람</p>
---

회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 
기본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(인)

2010년 3월 8일

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542호

##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의 구정전반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행정의 신뢰성과, 민주성,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, 구와 주민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주민”이란 주소를 울산광역시 북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에 두고 있는 자를 말한다.
- 2 “행정정보”란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.
3. “주민참여”란 구의 의사형성 단계에서부터 집행하는 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과 구가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.

**제3조(기본이념)** ① 주민참여는 주민의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해 누구라도 평등하게 구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주민과 구가 협동하여 주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동등하게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삼는다.

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 자치의 취지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.

**제4조(구청장의 책무)**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이하 “구”라 한다)은 주민 참여의 통로를 제도화하고 인터넷, 홈페이지 등을 통한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제공은 물론, 주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행정정보의 공개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교육,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 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주민의 권리와 책무)** 주민은 누구나 구정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, 민주시민으로서 자기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자각하여 적극적인 참여에 힘써야 한다.

**제6조(참여자치 기본계획 수립 등)**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자치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**제7조(회의공개의 원칙)** 구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, 법령 및 타 조례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 공개하며 회의결과는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.

**제8조(위원회의 주민참여)** ① 구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구성은 법령 및 다른 조례·규칙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모제나 추천제 등 공개적인 절차에 의한 일반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의 구성은 각계 각층의 주민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령 및 다른 조례 등에서 정한 자격기준과 특별히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③ 구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는 동일인이 같은 위원회 위원으로 현저히 오랜 기간 역임하거나 다수의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령 및 다른 조례 등에서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**제9조(주민제안)** 구청장은 구정발전에 대한 주민의 창의적 의견과 기획안을 상시 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 제안 받아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.

**제10조(예산편성의 주민참여)** 구청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 공개와 주민참여의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11조(구정정책 설명 청구제)** ① 주민은 구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, 이의 타당성에 대한 설명회 개최를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
1. 수사나 재판 중에 있거나 행정심판 등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

2. 당해 사무처리가 종료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사항

② 제1항의 구정정책 설명회 개최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청구일 현재 선거권이 있는 주민 500명 이상으로 한다.

③ 구청장은 구정정책 설명 청구가 있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설명회 청구에 응하여야 한다.

④ 구청장은 구정정책 설명회시 건의된 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를 설명회 청구인 대표와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.

**제12조(주민의견조사 등의 실시)** 구청장은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민의견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, 조사 후 그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.

**제13조(참여 포인트 등)** ①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제안 등

구정에 직접 참여한 주민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, 누적 포인트 내역 등을 구 홈페이지 등에서 열람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포인트 누적점수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**제14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# 부칙

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◆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◆

### 1. 제정이유

우리구 주민의 구정전반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행정의 신뢰성과 민주성,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와 주민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용어의 정의 【제2조】
- 나. 구청장의 책무 【제4조】
- 다. 주민의 권리와 책무 【제5조】
- 라. 참여자치 기본계획 수립 등 【제6조】
- 마. 회의공개의 원칙 【제7조】
- 바. 위원회의 주민참여 【제8조】
- 사. 구정정책 설명 청구제 【제11조】
- 아. 참여포인트 등 【제13조】
- 자. 참여자치 주민상 【제14조】

## 울산 울동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

울산 울동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위하여 「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0년 3월 8일

### 울 산 광 역 시 복 구 청 장

#### 1.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개요

- 가. 명 칭 : 울산 울동보금자리주택지구
- 나. 위 치 : 울산광역시 복구 효문동, 양정동 일원
- 다. 면 적 : 254,800m<sup>2</sup>

#### 2.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: 2010. 3. 8. ~ 2010. 3. 22.(14일간)

#### 3.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

- 가.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: 복구청 도시녹지과 (☎052-219-7423)
- 나. 열람내용 :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제안서

#### 4. 울산 울동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위 열람기간 동안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취소 공고

대기환경보전법 제7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1조의 규정에 의거 확인검사  
대행자가 다음과 같이 등록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.

2010년 03월 08일

### 울산광역시북구청장

1. 등록번호 : 제 북-06호
2. 업소명 : 이용사 1급 종합정비
3. 소재지 :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813-6번지
4. 대표자 : 김창식
5. 검사항목 : CO, HC, 공기과잉률, 매연
6. 등록일 : 2005년 12월 15일
7. 전화번호 : 052)287-7361